



OA 기기의 판매 및 리스 고객정보 등 영업비밀 유출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

50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본 오사카지방법원	사건번호	평성25년(와) 제7391호
판결 일자	2014. 3. 18.	판결 결과	청구 모두 기각
원고	플랜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토헨, P1, P2		
참조 법령			
영업 비밀	리스의 종료시기 데이터베이스, 고객정보		
키워드 (Keyword)	경업금지, 영업비밀 취득·사용		

02 사건 개요

본건은 원고가 전 직원인 피고 P2 및 동 피고의 근무지인 피고 주식회사 토헨(이하 "피고 토헨"), 피고 토헨의 이사 피고 P1에 대해, 동 피고들이 공동으로 피고 P2가 원고로부터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피고 토헨에서 이용하고, 동시에 예비적으로 피고 P2에 대해 원고와 동 피고 사이의 고용 계약상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주위적 청구,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이다.

03 주요 쟁점

원 고	⇔	피 고
<p>원고의 영업 분야는 OA 기기의 판매이며, 대부분 리스 형식을 취하므로 리스기간의 종료 시기는 매우 중요하며, 유용성, 비공 지성이 있다.</p>		<p>원고의 주장은 처음부터 문제가 되어야 할 영업비밀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p>
<p>비밀유지 서약을 했고 본건 데이터베이스 는 모두 비밀 지정이 되어있기에 패스워드 등 조치가 없었다 해도 비밀관리성이 있 다.</p>		<p>피고 P2는 원고가 주장하는 행위는 일절 하지 않았다.</p>
<p>퇴사한 최근 1년 내에 본건 데이터베이스 에서 관리되는 고객의 상세정보를 종이 매 체에 인쇄하여 외부로 반출하였고, 이것으 로 무단 취득하였다.</p>		<p>원고에 근무하는 동안 담당했던 약 700사 중에, 개인적으로 관계가 깊었던 사용자 회사 3, 40사 정도에 돌아다니며 인사를 하고, 원고를 퇴사하여 피고 토현에서 OA 기기를 취급한다는 보고를 했지만, 아무런 영업 행위도 하지 않았다.</p>
<p>원고의 고객을 일부러 선택하여 OA 기기 의 판매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건고 객정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p>		

04 판결 요지

<p>원고는 피고가 무단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전제에 맞지 않는다고밖에 할 수 없다.</p>
<p>원고는 본건 고객정보가 원고의 모든 직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열람 가능한 본건 데이 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던 것을 자인하는 이상, 본건 고객정보 중에 원고가 문제시 하 는 거래처와의 거래 상황 (구체적으로 거래된 기종, 그 리스 기간)은 직원에게 비밀로 유지해야만 한다는 객관적 인식을 야기시키는 성질의 정보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본건 고객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p>
<p>원래 본건 고객정보는 피고 P2가 원고 재직 중에 동 피고 자신이 담당한 고객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 개요를 알고 있는 것 자체는 "부정한 수단"에 의해 취득한 것에 아무런 해당이 되지 않는다.</p>

피고 P2는 단순히 영업직에 불과하고, 동 피고가 이러한 경업금지의무를 감수해야 할 지위, 직무에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이 의무를 지게 할 만한 충분한 보상조치를 강구하는 등에 대한 입증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 상기 직업 선택 자유의 제한을 정당화하기 충분한 근거는 어느 것도 인정할 수 없다.

05 Key Point

주요정보가 모든 직원이 열람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이 되어있는 등 비밀관리성이 없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다.

직업 선택의 자유에 제한이 되는 퇴사 후의 경업 금지의무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합리성을 지지할 근거가 필요하다.
